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

2014. 12. 18.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. 11. 18.

나. 제 안 자 : 마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1.

○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: 2014. 12. 02.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: 2014. 12. 09.

라. 상정일자 : 제192회 제2차정례회 제1차위원회(2014.12.10.)
제192회 제2차정례회 제2차위원회(2014.12.11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■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영 남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

나. 제출내역

○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3. 주요내용

○ 정기예금 이자수입 반영 및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예치금 항목 신설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 : 박상수)

1) 기금조성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기정액			변경후			증(△)감
	수입	지출	2014년도 말 조성액	수입	지출	2014년도 말 조성액	
남북교류협력기금	50,000	50,000	0	50,533	900	49,633	49,633

2) 자금 운용 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
항 목	기정액	수입액 (변경)	증(△)감	항 목	기정액	**지출액 (변경)**	증(△)감
합 계	50,000	50,533	533	합 계	50,000	**50,533**	533
전입금	50,000	50,000	0	비융자성 사업비	40,000	**0**	△40,000
이자수입	0	533	533	기본경비	10,000	**900**	△9,100
-				예치금	0	**49,633**	49,633

3) 검토결과

○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에서 발생한 "공공예금 이자 수입" 53만 3천원을 이자수입에 반영하고, 미집행된 민간경상보조금 4,000만원은 "예치금" 과목을 신설하여 2015년도로 이월하기 위한 것이며,

○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사항 : 없음